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재해대책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기타의 사유”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다.

제17조제2호중 “가능성이 없는 때”를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때”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중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제9호 및 제12조제1항제19호중 “경제여건변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환경오염방지”를 “경제여건변화, 환경오염방지”로 하며,

안 제13조제2항 중 “준공업 지역안의 용자 대상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를 “준공업 지역안의 용자 대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개선·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중소기업지원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시제품·기술·연구개발 등을

-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벤처기업집적시설" 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공동사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관련단체가 판로·입지·기술·경영 분야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9. "설비이전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지방이나 북한지역 또는 해외에서 단독·합작의 방식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또는 신규설비를 이전·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시장시설개선사업"이라 함은 시장,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점포시설개선사업"이라 함은 점포를 이전하거나 기존 점포의 시설 및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공장 및 사업장설치사업"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및 부지매입, 공장건축, 공장 또는 사업장을 입차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공동창고설치사업"이라 함은 조직화된 중소기업통업체 등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공동창고를 건립하거나 공동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입차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중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확인 받은 기업을 말한다.
 15.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중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1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을 말한다.
18. "중소기업관련단체"라 함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법인 및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를 말한다.
19. "중소무역업자"라 함은 무역업투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21.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규 규정에 의해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임점상인을 위하여 임시 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설치·운영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4.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②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에 대한 용자
2. 금융기관의 저리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운전자금계정과 시설자금계정으로 구분·설정하여 계리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에 있는 경우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산업경제국장
2. 분입기금운용관 : 중소기업과장
3. 기금출납원 : 자금지원담당사무관

②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기금운용심의회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심의대상)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제9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업정책과장
2. 중소기업과장
3. 소비자보호과장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운영) ①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금의 용자지원

제11조(운전자금 용자대상) ①운전자금의 용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영위자
2.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3.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4. 창업투자회사
5.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6. 중소기업업체
7. 서울형산업 영위자
8.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9. 시장이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용자받은 운전자금울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제4호를 제외한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자금 용자대상) ①시설자금의 용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주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영위자
2.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3.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또는 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4. 시장재개발사업자(임시시장 설치사업 포함)
5. 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 및 점포시설개선 사업자
6.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자
7. 창업투자회사
8. 외국인 투자기업 및 설비이전 사업자
9.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중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추진중인 자
10.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11.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자
12.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
13. 서울형산업 영위자
14.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관련단체
15.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자
16. 유통사업자
17. 건설사업자
18. 관광호텔사업자
19. 시장이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환경오염 방지 등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창업투자회사는 시장으로부터 용자받은 시설자금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8호 내지 제15호 및 제1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제13조(용자계획의 공고) ①시장은 매년도 초에 용자총액·용자한도·용자조건·용자절차 등의 기금 용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준공업지역 안의 용자대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용자신청)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용자대상선정 및 용자조건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용자대상선정기준·용자절차·용자한도 및 용자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용자금의 상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용자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추가용자) 시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용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8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운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전문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법인·단체 등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용자대상선정 등 용자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18조제1

<p>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하였거나 용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p>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8조제7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한다.</p>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중 “제12조”를 “제17조”로 한다.</p> <p>제2조를 제2조의2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조(도매시장의 개설)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의2(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40%;">정 기 휴 업 일</th> <th style="width: 40%;">영 업 시 간</th> </tr> </thead> <tbody> <tr> <td>양 곡 부 류</td> <td>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td> <td>07:00 ~ 18:00</td> </tr> <tr> <td>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td> <td>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td> <td>00:00 ~ 24:00</td> </tr> <tr> <td>화 해 부 류 약 용 작 물 부 류</td> <td>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td> <td>00:00 ~ 24:00</td> </tr> <tr> <td>축 산 부 류</td> <td>일요일, 법정공휴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td> <td>09:00 ~ 18:00</td> </tr> </tbody> </table>		구 분	정 기 휴 업 일	영 업 시 간	양 곡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7:00 ~ 18:00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0:00 ~ 24:00	화 해 부 류 약 용 작 물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0:00 ~ 24:00	축 산 부 류	일요일, 법정공휴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9:00 ~ 18:00
구 분	정 기 휴 업 일	영 업 시 간														
양 곡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7:00 ~ 18:00														
청 과 부 류 수 산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0:00 ~ 24:00														
화 해 부 류 약 용 작 물 부 류	일요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0:00 ~ 24:00														
축 산 부 류	일요일, 법정공휴일 신정(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09:00 ~ 18:00														
<p>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상장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를 “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①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p>	<p>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p> <p>③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출하자과 매수인으로 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제2항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p> <p>제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위탁상장수수료”를 각각 “위탁수수료”로 한다</p>															